

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(LINC+) 사업단 운영규정

제정 2018.02.20.

개정 2018.12.10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 「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(LINC+) 운영규정」에 따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)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규정은 “사업단 운영규정(이하 “운영규정”)이라 한다.

제3조(세부업무) 사업단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단의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
2. 산학협력 체결을 통한 기업신속대응센터 구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
3.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및 활용
4.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
5.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산학협력 활동 지원
6. 기타 LINC+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및 프로그램 등 운영 및 지원

제2장 조직 및 구성

제4조(조직) LINC+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단은 LINC+ 육성사업 운영규정(교육부 훈령 제 214호)에 의거 총장 직속 기구로 설치한다.

제5조(사업단장) 사업단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LINC+ 사업계획의 수립
2. LINC+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
3. LINC+ 사업실적 보고
4. LINC+ 사업비의 집행
5. 그 밖의 사업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

제6조(위원회) 사업단은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두고, 운영 계획을 평가, 진행 상황 및 결과 평가 등의 심의를 한다.

제3장 사업단 운영

제7조(업무) 사업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LINC+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LINC+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LINC+ 관련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
4.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

제11조(사업비) 사업단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로 운영한다.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기준에 따른다.

제5장 산학협력 가족회사

제8조(산학협력 가족회사) 본교와 기술·경영지도, 공동연구, 현장실습, 취업, 교육, 공동장비 이용 등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산학협력 가족 회사를 등록하여 관리한다.

제6장 기업신속대응센터

제9조(기업신속대응센터) 가족회사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업신속대응센터를 운영한다.

제10조(구성 및 운영) 본교 기업신속대응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.

제7장 자체평가위원회

제11조(자체평가) 본교가 LINC+사업 관련한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LINC+ 사업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2조(구성 및 운영) 본교 자체평가 규정에 따른다.

제8장 기타

제13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훈령 제214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(LINC+) 운영규정 및 주관부처로부터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LINC+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. 또한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